

하남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99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3. .
발 의 자 : 김은영 의원

1. 제안이유

- 「하남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2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이나 동 법의 동 조항이 개정되어 본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바 본 「하남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하남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

3. 폐지조례안 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5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6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0년 3월 2일 ~ 3월 12일(10일)

나.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7. 부서협의 결과 : 특이사항 없음

하남시 조례 제 호

하남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하남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66조의2(복구비 등의 선지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(이하 “복구비등”이라 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59조 또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6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주민의 주(主)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확인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: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
2. 국민연금 가입·납입에 관한 사항 : 「국민연금법」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
3. 국민건강보험 가입·납입에 관한 사항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

④ 제1항에 따른 복구비등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·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하남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(현행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[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](#)」 제66조의2에 따라 하남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하남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기능)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하남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1.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
2.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
3.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
4.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협의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전
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하남경찰서장, 하남소방서장,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, 교통 행정담당과장, 농식품위생담당과장<개정 2017.07.11.>
2.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민간단체의 대표
3.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
제4조(임기 등)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단체의 대표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차례만 연임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5조(위촉 해제)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국외이주,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2.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
3.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장은 교통행

정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촉직 위원장은 시장이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위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공동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고, 긴급한 안전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 안전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
④ 협의회 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) 협의회와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안전총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
제9조(분과위원회) ① 협의회 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협의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.

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
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.

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
⑤ 분과위원회 회의결과는 간사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 의 위원장은 안전총괄업무담당국장이 되고, 실무위원은 실무협의회 의 위원장 의 요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공공기관·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공공기관·단체 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협의회에서 심의한 안전의 실행계획이나 위임된 안전
2. 협의회 의 실천과제 발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
3.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 등

④ 실무협의회 의 결과는 간사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실무협의회 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협의회 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실무협의회 의 회의는 제7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위원장”은 “실무 위원장”으로, “위원”은 “실무위원”으로 본다.

제11조(실비보상)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, 분과위원회, 실무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

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하남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일비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회의결과)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·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
제13조(회의록) 간사는 회의 일시, 장소, 출석위원과 관계인, 안건, 경과와 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4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)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하남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.